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모집 공고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상호 사회문화 이해 및 사회통합정책 홍보·자문 등을 위해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참여할 이민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관심 있는 재한 외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월 26일

법무부장관

① 선발 인원

- 총 15명 내외

② 신청 자격

- (필수자격)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재한외국인 또는 귀화한 국민
 - 공고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자
 - 외국인등록 후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이 경우 국내거주 요건은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귀화신청자 국내거주 요건)를 준용한다.
 - 한국어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 수준이 높은 사람
 - 한국에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 (우대자격) ※ 필수사항 아님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 국내 이민자 커뮤니티 또는 방송, 기자, 각종 강의 등으로 활동 중인 사람 또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등

3 결격 사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멘토로 선정될 수 없음

1. 붙임 1)의 중대법 위반을 이유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제외한다.)
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3.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의 합산액이 200만원을 초과하고, 완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처분액이 감경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출입국관리법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이상 위반한 자
6. 「조세 등 체납외국인 체류관리 통합지침」에서 규정하는 세금 체납자
7. 사회통합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

4 멘토단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활동 실적 등에 따라 2회 연임 가능

5 주요 활동 분야

○ 재한외국인 대상 멘토 교육 강의 (연 2회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소통(100분 : 50분 강의 + 50분 참여자와의 대화)

※ 각 멘토는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멘토 강의 활동을 하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방문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국민 대상 상호문화이해 강의 (특강)

- 국민을 대상으로 멘토의 출신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

○ 인식개선 지원 및 정책 홍보 활동

- 재한외국인 대국민 인식개선과 국내 정착 지원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 홍보 활동 등

○ 기타 정책 자문 등

- 사회활동, 멘토 교육 및 특강 등을 통해 얻은 현장 의견을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자문 등에 활용

6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을 기준으로 적격여부 심사

○ (2차 선정위원회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한국어 강의 능력, 대한민국 사회활동 내용, 국적, 활동 예정 지역 등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7 선정 절차

○ (접수기간) '24. 1. 29.(월) ~ 2. 13.(화) 17:00

※ 응모기간 마감시간 내에 서류 등이 도착하여야 함

○ (선정심사) '24. 2. 19.(월) ~ 2. 23.(금)

○ (선정결과 공고) '24. 2. 27.(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및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선정결과 발표

※ 선정 결과만 발표하며, 각 신청자별 심사점수는 비공개

○ (양성교육) '24. 3월 초(미정)

8 제출 서류

① (필수)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신청서 1부

② (필수) 자기소개서 1부

③ (필수)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④ (선택) 3 ~ 5분 이내의 자기소개(강의) 동영상 파일 1부

※ 기존에 한국어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강의 동영상을 제출하거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나 홈페이지 주소 제출 가능

⑤ (선택) 기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9 접수처 및 참고사항

○ (접수방법) 전자메일(E-mail)로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E-mail 주소 : sudi93@korea.kr

- 문의처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붙임5 참고)
법무부 이민통합과(02-2110-4325)

○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붙임 : 1. 멘토 결격 사유 중대범죄 1부

2. 작성요령 1부

3.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신청서 양식 1부

4. 자기소개서 양식 1부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6.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연락처 1부

멘토 결격 사유 중대범죄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된 특정강력범죄
- 나.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규정된 죄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의 죄
-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5조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6조의 죄
- 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조의 죄
- 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죄
- 자. 「국가보안법」 위반 죄
- 차. 보이스포싱 범죄.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사칭,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정되는 것)
- 카.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제1항, 제14조의2(관광상륙허가)제1항,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1. 신청서는 모든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신청서와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는 서명을 한 스캔본으로 제출

2.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사람만 참여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 귀화자는 원 국적과 국적취득연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체류지(주소)는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및 주민등록 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5. 이메일과 휴대폰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고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합니다.

6. 모든 활동은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어능력을 선택하여 적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이 있는 사람은 합격증이나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합격증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출력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하며, TOPIK 성적증명서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

7. 각종 활동경력이나 수상 경력은 증빙서류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8. 신청서나 자기소개서는 내용에 따라 여러 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9. **(선택사항 : 강의 동영상 파일 제출)** 기존에 한국어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주제에 관계없이 해당 강의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거나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고, 별도의 강의 동영상이 없으면 3 ~ 5분 이내의 자기소개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붙임 4

자기소개서

성 명	(한글이름) (영문이름)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	--

자기 소개서

- ※ 대한민국에 오게 된 사연, 대한민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 좋아하는 취미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 주세요.
- ※ 대한민국에서의 경험이나 인상 깊었던 일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 국내 신문, 방송 활동이나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 1인 방송 운영경력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이민자 멘토로서의 포부 / 향후 한국에서 희망하는 활동 계획

- ※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로서 이민자나 국민에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적어 주세요.
- ※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붙임 6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주소

출입국관서	연락처	주소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02-2650-6217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2-2650-4802	(0779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부산출입국 외국인청	051-461-3084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인천출입국 외국인청	032-890-6411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031-695-3821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064-741-5442	(63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3-980-3558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2-220-2190	(34812)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여수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1-689-5517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1-828-9488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3층
울산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2-279-8029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2-605-5210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창원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55-981-6020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33-269-3222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43-230-9081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063-249-8604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